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929
----------	------

2021년 12월 17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3. 상정일자 :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21년 12월 17일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1. 제안이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과 조례 간 상이한 내용을 통일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조례에 띄어쓰기 오류, 중복 표현 등이 존재하여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기관 또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경우 기관장이 4급 이상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5급 이상 상급기관으로 변경 (안 제2조제1항)
- 나. 자동차운전업무 종사 공무원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협의회 가입대상 확대 (안 제3조제1항제7호 삭제)
- 다. 직장협의회설립증 교부 기한 7일에서 3일로 단축 (안 제4조제4항)
- 라. 직장협의회와 설립기관 간 합의는 문서에 의하도록 규정 (안 제11조제1항)
- 마. 협의회 해산 시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 신설 (안 제12조제4항 신설)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929호로 제출되어 2021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오류 및 중복 표현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5516호, 1988.2.24.제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적 성격의 협의체로, 서울시교육청도 2010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근거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직장협의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지난 2002년에 설립된 직장협의회가 2006년 이후 공무원노조가 설립되면서 해산되었기 때문입니다.¹⁾
- 따라서 동 조례는 이를 적용할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례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 그러나 상위법령에서는 직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여전히 조례로 위임²⁾하고 있고³⁾, 실제 직장협의회 해산의 계기가 되었던 공무원노조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공무원이 직장협의회 운영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으며⁴⁾,

향후 필요에 따라 직장협의회 설립시 입법 미비로 인한 혼란을 방지

1) 서울시교육청은 2002년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으나,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2006년 이후 직장협의회를 해산하고 공무원노조가 설립됨.

2)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시기·방법,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3) 공무원노조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공무원의 노조 설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당시 공무원 노조가 허용되었음을 이유로 직장협의회법 폐지안 발의, 임기만료로 폐기), 계속해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령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4) '2020공무원직장협의회 길라잡이', 행정안전부, 2020.6., 151쪽 참조

- 공무원노조법 시행이후 직협 제도가 계속 운영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69.7%, '현재는 필요하나 향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0.9%, '필요없다'는 의견이 9.0%로 나타남

한다는 차원에서 동 조례는 비록 현재는 실효성이 없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
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산하 노동조합 현황

구분	단체명
교직단체	-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 한국교원노동조합서울본부(한교조) - 대한민국교원노동조합서울지부(대한교조) -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교조)
소계	5개
공무원노조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노조) -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서울노) - 한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시교육청지부(한공노)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서울시교육청지부(민공노) - 서울특별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사서노) - 전국 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서울시교육청지부(전일노) -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서울시교육청지부(통공노)
소계	7개
교육공무직노조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 -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 서울일반노동조합학교급식지부 -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
소계	5개
합계	17개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설립기관의 범위(안 제2조),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안 제3조), 협의회 설립(안 제4조), 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안 제11조), 협의회 의무(안 제12조) 등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붙임1] 참고)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이나” 를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으로 하고,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이나” 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자를 포함한다.” 를 “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타자등” 을 “타자 등”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4항 중 “제2호의” 를 “ 단서의” 로 하고, “지정하여” 를 “협의 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제7조에 따른 협의회규정과 협의 위원명부, 협의회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를 “한다.” 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7일” 을 “3일”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지 제3호 서식” 을 “별지 제3호서식” 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협의회 가입자격” 을 “가입자격”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공무원중” 을 “공무원 중” 으로 하고, “회원명부등이” 를 “회원명부 등이” 로 한다.

제10조제4항 단서 중 “설립기관의 장은” 을 삭제한다.

제10조제6항 중 “회무” 를 “사무” 로 하고,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를 “경우에는 지체없이,” 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협의회규정등” 을 “협의회규정 등” 으로 하고, “없는 한” 을 “없는 한” 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협의회가 해산한 때에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제목 중 “근무시간중” 을 “근무시간 중” 으로 “협의회활동” 을 “협의회 활동” 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근무시간중에” 를 “근무시간 중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